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92호

**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
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제 출 자	조배식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호	제92호
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06. 08.

대표발의자 : 조배식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서승필,
장진호, 이태모,
윤금숙

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출장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
- 나. 기타사항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- 조례안예고 : 2023. 6. 8. ~ 6. 12.(5일간)

□ 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규칙 제 호

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/3 이상이 되어야 한다.”
를 “심사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” 로 한다.

제7조 중 “「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 를 “「논산시의회 각종
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제9조 중 “30일전까지” 를 “15일전까지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조배식의원 외 5명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/3 이상이 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⑤ ~ ⑧ (생 략)</p> <p>제7조(수당 및 여비)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<u>논산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</u>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출장계획서 제출) ① 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회의원은 출국 <u>30일전까지</u>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심사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수당 및 여비) ----- ----- ----- 「<u>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u>」 ----- -----.</p> <p>제9조(출장계획서 제출) ①----- ----- -----<u>15일전까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 「지방자치법」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